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이용계약】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① 계약 당사자
- ② 계약기간
-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1,2등급)	63,530
가-8	240분 이상(1,2등급)	70,080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제2항의 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5.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 분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41,820	56,060	69,730	76,820	82,370
2등급	38,720	51,930	64,590	71,160	76,310
3등급	35,740	47,940	59,640	65,750	70,500
4등급	34,120	46,300	58,010	64,090	68,860
5등급	32,490	44,650	56,360	62,460	67,240
인지지원등급	32,490	44,650	56,360	56,360	56,360
비 급 여	1일 비급여(식비 한 끼당 2,900원)				

제10조【기관의 기본 책무】

-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의무
 - ⑤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의무

제13조【계약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③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3. 제17조 1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제17조 2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